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27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정은라(공판)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D에 'E'라는 상호로, F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H 사이트에 'G'과 'I'라는 상호로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J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한 'K'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의 이미지가 무단 복제된 'L' 제품(이하 '이 사건 파우치'라 한다)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작성 고소장, 보충진술서, 수사진술서, 고소인 회사의 주지성 홍보자료, K 저작권 등록증, 고소인 회사의 광고 및 홈페이지 이미지, 고소인 저작물과 피고소인 침해 이미지 비교샷 및 피고소인 온라인 판매행위 자료, 각 피고소인 온라인 판매행위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파우치가 저작권이 있는 상품인지 몰랐고, 저작권이 있음을 알았다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나.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① 침해 대상물이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고, ② 저작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도 볼 수 있어, 이를 모두 살펴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중국 사이트에서 파우치 등 샘플을 사입한 뒤 반응이 좋은 품목 위주로 계속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이 사건 파우치도 같은 경로로 사입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캐릭터의 저작권 보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 N 등 다른 사이트에서도 다수 판매되고 있었던 점, ㉡ 저작권이 있으면 통관이 되지 않는데 이 물건은 사입(통관)이 가능하였던 점, ㉢ O 지하상가 등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점을 들었다.

3)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어디에도 이 사건 파우치의 저작권 존부를 문의하거나 조회한 사실이 없다.

4) 피해자 회사는 2022. 5. 12.경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2022. 7. 20.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은 후 약 2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재고를 폐기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파우치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전혀 몰랐다"고도 진술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경로로 사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그 디자인·캐릭터가 이미 상품화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최소한의 확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 전후로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도 '다른 곳에서도 팔고 있었다', '통관이 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침해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이지, 저작물성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용 가능한 방법을 통해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하는 등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오인에 이르게 된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위법성의 소지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회피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도 위반하고 있다는 사정에 안주한 경우까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이 사건 캐릭터가 타인의 창작물이라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앞서 본 사정들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설했더라도,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은 모두 '다른 판매자도 하고 있었다'거나 '단속되지 않았다'는 소극적·간접적 정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변호사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사업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판매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현 _____